M39222ⓒ

전문의약품 | 분류번호 : 117 (정신신경용제)

영진약품

SNRI계 항우울제

벤팍신®서방 캡슐 37.5mg 75mg

(벤라팍신염산염)

VENFAXINE SR cap

【원료약품의 분량】 이 약 1캡슐 중

- 벤팍신®서방캡슐 37.5mg
  벤라팍신염산염서방성과립(별규) ····· 125mg
  (벤라팍신으로서 37.5mg)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 40호, 황색 5호
- 벤팍신®서방캡슐 75mg
  벤라팍신염산염서방성과립(별규) ····· 250mg
  (벤라팍신으로서 75mg)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 40호, 황색 5호

【성 상】

- 벤팍신®서방캡슐 37.5mg : 백색~회백색의 과립이 들어있는 상부 연회색, 하부 살구색의 캡슐
- 벤팍신®서방캡슐 75mg : 백색~회백색의 과립이 들어 있는 상, 하 살구색의 캡슐제

【효능·효과】 1)우울증 2)사회공포증

【용법·용량】 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며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캡슐을 나누거나, 분쇄하거나, 씹거나, 물에 녹여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성인:

1. 우울증: 추천되는 초기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1회 75mg 경구 투여합니다. 환자에 따라 1일 75mg을 투여하기 전에 약물에 대한 적응을 위해 약물투여 시작 후 4~7일 동안 1일 37.5mg 투여할 수 있습니다. 2주 투여 후 임상적 개선이 좀 더 요구될 경우에는 1일 150mg으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1일 225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용량 증가 시 1일 75mg 이하로 증량하며, 이 약 또는 이 약의 주요 대사물의 혈중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까지는 약 4일의 소요되므로 용량 증가 시 적어도 4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이 약 성분의 일반 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는 이 약으로 변경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약 성분의 일반 정제 1회 37.5mg을 1일 2회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 이 약 75mg을 1일 1회 복용하면 됩니다. 변경 시 개별적인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회공포증: 추천되는 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1회 75mg 경구투여합니다. 용량 증가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3.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1) 간장애 환자: 간경변 환자는 벤라팍신과 O-데스메틸벤라팍신(ODV)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반감기가 지연되므로,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용량을 50% 감소시켜야 합니다. 간경변 환자의 경우 약물이 청소율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환자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합니다.
   2) 신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GFR=10~70 mL/min)에게서 정상인에 비하여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벤라팍신 및 ODV의 반감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1일 총 투여량의 25~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투여 시 총 1일 투여량의 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이 완전히 끝난 후에 투여해야합니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 약물의 청소율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환자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합니다.
4. 유지/연속/장기투여: 의사는 각각의 환자에 있어서 이 약의 장기치료의 유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울증 또는 사회공포증 환자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임상시험의 근거는 없으나, 급성 우울증의 경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5. 이 약의 치료 중단 시: 이 약을 1주일 이상 투여한 후 중단한 경우에는 급단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일에 걸쳐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도록 합니다. 이 약을 6주 이상 투여한 환자는 적어도 2주일에 걸쳐서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여야 합니다. 이 약의 급단증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감량기간 동안과 투여 중단 후 후향조사에서 3%이상 환자들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위약군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한 어지럼증으로는 경조증, 불안, 흥분, 산경과민, 혼란,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피로, 졸음, 감각이상, 어지러움, 두통, 발한, 구갈, 식욕부진, 설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단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치료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감량에 필요한 기간은 투여용량, 치료기간, 그리고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성향 및 항우울제: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단기간의 연구에서 2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과 비교하였을 때 항우울제가 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에 비해 항우울제에서 이러한 위험이 감소하였습니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합니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2) 지속적 고혈압: 벨라팍신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혈압의 지속적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시판 전 우울증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75~375mg/일 투여 시, 3%(19/705)의 환자에서 지속적 고혈압(앙와위의 확장시 혈압(SDBP)이 90mmHg 이상이고 3회 연속 측정시 기준보다 10mmHg 이상인 경우)을 나타냈습니다. 벨라팍신염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벨라팍신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 75~225mg/일을 투여 받은 환자 중 0.6%(5/771)가 지속적 고혈압을 나타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 75~225 mg/일을 투여 받은 환자 중 0.9%(9/973)가 지속적 고혈압을 나타냈습니다. 벨라팍신정의 경우, 100~300 mg/일 투여 시 3~7%, 300 mg 초과 투여 시 13% 정도 혈압이 상승하여 벤라팍신정의 지속적 고혈압 발현은 용량 의존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약의 평균 300mg/일을 초과한 고용량에서의 지속적 고혈압 발현 정도는 환자의 수가 적어 충분히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약 75mg/일 이하를 8~12주 동안 투여 시 우울증에 대한 시판 전 위약대조시험에서, 위약군에서 평균 SDBP가 0.1mmHg 감소한 반면, 이 약 치료군에서는 평균 0.37mmHg 증가하였습니다.
   이 약 75mg/일 이하를 8주와 6개월 동안 투여 시 범불안장애에 대한 시판 전 위약대조시험에서, 위약군에서 평균 SDBP가 각각 0.92mmHg 0.74mmHg 감소한 반면, 이 약 치료군에서는 각각 평균 0.02mmHg 증가와 0.63mmHg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 약 75 mg/일 이하를 각각 12주와 6개월 동안 투여한 시판 전 사회공포증에 대한 위약대조 시험에서, 위약군에서 평균 SDBP가 각각 1.22 mmHg, 0.65 mmHg 감소한 반면 이 약 치료군에서는 각각 평균 1.26 mmHg, 0.49 mmHg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약 75 g/일 이하를 10~12주 동안 투여한 시판 전 공황장애에 대한 위약 대조 시험에서 위약군에서 평균 SDBP가 0.99 mmHg 감소한 반면 이 약 치료군에서는 평균 0.97mmHg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약 75 mg/일 초과량을 8~12주 동안 투여 시 우울증에 대한 시판 전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군에서는 평균 SDBP가 3.56 mmHg 증가하였습니다. 이 약 75 sg/일 초과량을 8주와 6개월 동안 투여 시 범불안장애에 대한 시판 전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군에서는 각각 평균 SDBP가 1.68 mmHg 증가와 1.28 mmHg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 약 75 mg/일 초과량을 각각 12주와 6개월 동안 투여한 시판 전 사회공포증에 대한 위약대조 시험에서 이 약 치료군에서는 각각 평균 SDBP가 1.34mmHg 와 1.96mmHg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 약 75 mg/일 초과량을 10~12주 동안 투여한 시판 전 공황장애에 대한 위약 대조 시험에서 이 약 치료군에서는 평균 SDBP는 0.16mmHg이 상승하였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시판 전 시험에서, 이 약 치료군 중 0.7%(5/705)와 혈압상승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의 혈압증가는 대부분 적당한 범위였습니다.(12~16 mmHg, SDBP). 범불안장애에 대한 8주와 6개월 동안 진행 된 실험에서 0.7%(10/1381)과 1.3%(7/535)가 혈압상승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의 혈압증가는 대부분 적당한 범위였습니다.(12~25mmHg , SDBP 8주 :8~28mmHg, 6개월) 사회공포증에 대한 6달 동안 진행 된 시판 전 시험에서, 이 약 치료군의 0.6%(5/771)가 혈압상승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의 혈압상승들은 적당한 범위였습니다(7~19 mmHg , SDBP). SDBP의 지속적 상승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혈압의 정기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벤라팍신을 투여 받는 동안 지속적인 혈압상승을 나타낸 환자들에 대해서는 용량감소 또는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MAO억제제와의 상호작용: MAO억제제 복용을 최근에 중단하고 이 약 복용을 시작하였거나, MAO억제제의 복용 시작 전에 이 약 치료를 최근에 받았던 환자들에게서 이상반응이, 일부에서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반응으로는 진전, 간대성 근경련, 발한, 구역, 구토, 홍조, 어지러움,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고열, 발작과 사망이 나타났습니다. 벤라팍신과 유사한 약리학적 성질을 갖는 항우울제와 MAO억제제를 병용한 환자에서도 심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이상반응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의 경우에는 고열, 경직, 간대성 근경련, 활력 징후의 빠른 변동을 일으킬만한 자율신경계의 불안정과 섬망과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극한 초조 상태를 포함한 정신상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삼환계 항우울제와 MAO억제제와의 병용 시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고열과 발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상반응들은 최근 이 약들을 중단하고 MAO억제제의 복용을 시작한 환자들에게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약과 MAO억제제의 병용사용에 대해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평가된 바 없습니다. 이 약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이므로, 이 약은 MAO억제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거나 또는 MAO억제제의 치료 중단 후 적어도 14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약의 반감기를 기초로 할 때 MAO억제제 복용은 이 약 복용 중단 후 적어도 7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4) 세로토닌 증후군: 다른 세로토닌성 제제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인 세로토닌 증후군 또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유사증상이 이 약의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세로토닌성 신경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제제들(SSRI, SNRI, 및 트립탄.), 세로토닌의 대사를 손상시키는 약물(MAO억제제포함하다.), 또는 항정신병약물 또는 다른 도파민 길항제와 병용투여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은 정신 상태 변화(초조, 환각, 혼수), 자율신경계 불안정(빈맥, 불안정한 혈압, 고열), 신경 근육 이상 (반사항진, 협동장애), 그리고 위장관 증상(구역, 구토 및 설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이 가장 증증의 상태일 때 고열, 근육경직, 활력징후의 빠른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자율신경계 불안정 및 정신 상태 변화를 포함하는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MS)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MAO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수유부 5) 18세 미만의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자살시도: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임상적 악화 및 자살경향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거나 용법·용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들,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불안, 초조, 공황발작, 불면증, 흥분성, 적개심, 공격성, 충동성, 정좌불능증(정신운동 불안정), 경조증, 조증, 기타 행동의 이상 변화, 우울증의 악화, 그리고 자살관념의 발생에 대해 경계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자살사도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그 가능성은 계속됩니다.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는 치료 시작 시 자세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약 처방 시 과량 복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양호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량이 처방되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 시와 같은 주의가 범불안장애 환자 또는 사회공포증 환자 치료 시에도 필요합니다.
   2) 발작: 우울증과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에 대한 각각의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705명과 1,381명, 819명에게서 발작은 보고된 바 없으나 공황장애에 대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1건의 발작이 1,001명의 환자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벤라팍신서방정제의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여러 용량의 벤라팍신 치료 환자들의 0.3%(8/3,082)에게서 발작이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항우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약을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하며, 발작을 일으킬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일상시험 기간 중 발진은 이 약 치료환자의 4%에서 발생하였고 두드러기는 0.7%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1% 미만이었습니다. 발진은 주로 반점상 구진이었고, 트랜스아미나제 상승과 관련된 경우 또는 혈관염을 암시하는 전신적 발현과 관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약 치료 환자중 발진과 두드러기가 심한 것으로 판명된 환자는 0.6%였습니다. 환자들은 발진, 두드러기 또는 이와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시험에서 약물 탐닉이나 그런 행동의 징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상 경험을 근거로 중추신경계 활성약물의 오용, 남용 범위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약물 남용의 병력에 대해 조사하고 그러한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오용 또는 남용의 징후(내성발현, 용량증가, 약물 탐닉행동 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5) 신장애/간경변 환자: 신장애(GFR=10~70 mL/min) 또는 간경변 환자들에게서 벤라팍신의 활성 대사물의 청소율은 감소되고, 반감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는 용법·용량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자용량으로 투여합니다. 모든 항우울제와 같이 이들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조증/경조증 활성: 우울증에 대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조증과 경조증이 이 약 처료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0.3%, 0.0% 발생하였고, 범불안장애에 대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는 각각 0.0%와 0.2%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공포증에 대한 시판 전 시험에서는 이 약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조증과 경조증이 각각 0.2%, 0.0% 발생하였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시판 전 시험에서는 이 약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조증과 경조증이 각각 0.1%와 0.0% 발생하였습니다. 이약의 성분의 일반정의 우울증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조증과 경조증이 위약군 0.0%에서 발생한 반면, 이 약 치료군의 0.5%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증/경조증 활성은 다른 시판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조증환자의 일부에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항우울제와 같이 이 약은 조증의 병력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7) 심근경색증을 최근에 앓았던 환자나 심질환이 있는 환자: 벤라팍신의 작용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아직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약 시판 후 이 약의 투여 시, 특히 과다 투여 시 심박동장애로 인한 사망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증의 심박동장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 전 위험과 효능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8) 공격성 병력이 있는 환자: 이 약을 투여할 때 다른 항우울제 투여 시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9)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합니다.
4. 이상반응
   1) 단기간 위약대조시험에서 발생된 이상반응
      (1) 치료중단과 관련된 이상반응
      ① 우울증에 대한 위약 대조 시험에서 이 약을 복용한 357명의 환자 중 약 11%가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하였고, 위약을 복용한 환자 285명 중 6%가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범불안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는 이 약을 복용한 1,381명의 환자 중 약 18%, 위약을 복용한 555명의 환자 중 약 12%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사회공포증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는 이 약을 복용한 819명의 환자 중 약 15%, 위약을 복용한 695명의 환자 중 약 5%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는 이 약을 복용한 1,001명의 환자 중 약 7%, 위약을 복용한 662명의 환자 중 약 0%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게 된 그리고 약 복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다 빈번한 이상반응(1%이상, 대조군과 비교 시 이 약 치료군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치료중단과 관련된 증상들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표1. 위약대조시험에서 치료 중단을 유발한 이상반응[1]

증상	우울증[2]		범불안장애[3,4]		사회공포증[5]		공황장애	
	벤라팍신서방제제 (n=357)	위약 (n=285)	벤라팍신서방제제 (n=1381)	위약 (n=555)	벤라팍신서방제제 (n=819)	위약 (n=695)	벤라팍신서방제제 (n=1001	위약 (n=662)
전신								
두통	-	-	-	-	1%	(1%	-	-
무력증	-	-	3%	(1%	2%	(1%	1%	0%
소화기계								
구역	4%	(1%	8%	(1%	3%	1%	2%	(1%
식욕감퇴	1%	(1%	-	-	-	-	-	-
구갈	1%	0%	2%	(1%	-	-	-	-
구토	-	-	1%	(1%	-	-	-	-
신경계								
어지럼움	2%	1%	-	-	2%	(1%	-	-
불면증	1%	(1%	3%	1%	2%	(1%	1%	1%
신경과민	-	-	2%	(1%	-	-	-	-
졸음	2%	(1%	3%	(1%	2%	(1%	-	-
진전	-	-	1%	0%	-	-	-	-
피부								
발한	-	-	2%	(1%	-	-		
비뇨생식기계								
발기불능[3]	-	-	-	-	2%	0%		

[1] 우울증에 대한 세 시험 중 두 시험은 용량조절시험이었고, 한 시험은 고정용량시험이었습니다. 범불안장애에 대해 실시된 네개의 시험은 고정용량시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용량조절시험이었습니다. 사회공포증에 관한 4개의 시험은 용량조절시험이었고 하나는 고정용량시험이었습니다. 공황장애에 관한 시험 중 두 시험은 용량조절시험이었고 두 시험은 고정용량시험이었습니다.
[2] 우울증에 대한 미국 내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 중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사려되고, 치료를 중단시켰던 그 외의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벤라팍신서방제제(n=192), 위약(n=202)) : 고혈압(1%, (1%) ; 설사(1%, 0%) ; 이상감각(1%, 0%) ; 진전(1%, 0%) ; 비정상적인 시야, 주로 시야흐림(1%, 0%) ; 비정상적인 사정, 주로 사정지연(1%, 0%)
[3] 범불안장애에 대한 두 가지의 미국 내 단기간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 중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사려되고, 치료를 중단시켰던 그 외의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약(n=476), 위약(n=201)) : 두통 (4%, (1%) ; 혈관확장 (1%, 0%) ; 식욕감퇴2%, (1%) ; 어지러움(4%, 1%) ; 비정상적 사고(1%, 0%) ; 비정상적 시야(1% , 0%) [4] 범불안장애에 대한 미국 내 장기간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 중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사려되고, 치료를 중단시켰던 그 외의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약(n=533), 위약(n=257)) : 성욕 감퇴 (1% , 0%)
[5] 사회공포증에 대한 미국 내 6개월의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 중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사려되고, 치료를 중단시켰던 그 외의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약(n=257), 위약(n=129)) : 성욕 감퇴(1% , 0%) ; 신경과민 (3%, 0%) [6] 남성환자수를 근거로(이 약=454, 위약=357).
      (2) 이 약 치료환자 중 2%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우울증(12주, 용량 범위 75~225 mg/일), 범불안장애(8주, 용량 범위 37.5~225 mg/일), 사회공포증(12주 75~225 mg/일) 과 공황장애(12주 37.5~225 mg/일) 의 급성치료 중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은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 약(75~225 mg/일) 치료환자에서 발생률이 2% 이상 되는 이상반응은 각각 표 2, 표 3, 표 4, 표 5와 같습니다. 투여기간 동안 한가지 이상반응을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한 환자의 비율은 각 군별로 표시하였습니다. 보고된 이상반응을 표준 COSTART-based Dictionary terminology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처방의사들은 임상 시험에 참여하였던 환자들과 환자 특성 및 그 외 요인이 다른 보통의 진료과정에서 이 숫자들이 이상반응의 발현률을 예견하는데 사용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용된 빈도를 다른 치료, 용도, 시험자를 수반한 다른 임상 시험에서 얻은 숫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용된 숫자는 처방의사들에게 이상반응 발생률에 대한 약의 상대적 기여와 바약물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우울증: 우울증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은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비정상적인 사정,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갈, 식욕감퇴), 중추신경계장애(어지러움, 졸음, 비정상적인 꿈), 발한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두개의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환자 중 5%이상에게서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2배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은 성기능이상(발기부전, 여성에게서 이상성감증, 성욕감퇴), 위장관계 장애(변비, 고창), 중추신경계 장애(불면증, 신경과민, 졸음, 진전), 성기능 이상(비정상적 사정, 발기부전), 하품, 발한, 시각이상 등이 있었습니다.

표2. 우울증에 대한 단기간의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률[1,2]

신체부위	증상	벤라팍신서방제제(n=357)	위약(n=285)
전신	무력증	8%	7%
심혈관계	혈관확장[3]	4%	2%
	고혈압	4%	1%
소화기계	구역	31%	12%
	변비	8%	5%
	식욕감퇴	8%	4%
	구토	4%	2%
	고창	4%	3%
대사/영양계	체중감소	3%	0%
신경계	어지러움	20%	9%
	졸음	17%	8%
	불면증	17%	11%
	구갈	12%	6%
	신경과민	10%	5%
	비정상적 꿈[4]	7%	2%
	진전	5%	2%
	우울증	3%	(1%
	이상감각	3%	1%
	성욕감퇴	3%	(1%
	초조	3%	1%
호흡기계	인두염	7%	6%
	하품	3%	0%
피부	발한	14%	3%
특수감각	비정상적인 시야[5]	4%	(1%
비뇨생식계	비정상적 사정(남)[6,7]	16%	(1%
	발기부전[7]	4%	(1%
	오르가즘장애(여)[8,9]	5%	(1%

[1] 이 약 치료환자 중 2%이상에게서 발생하였으나, 위약 치료환자에게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습니다. 복통, 뜻밖의 상해, 불안, 등통증, 기관지염, 설사, 월경통, 소화불량, 감기증후, 두통, 감염, 통증, 심계항진, 비염, 부비동염
[2] (1%는 0%보다는 크나, 1%보다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3] 대부분 홍조 [4] 대부분 생생한 꿈, 악몽, 다몽 [5] 대부분 시야 흐림 [6] 대부분 사정지연 [7] 남성환자수를 근거로 [8] 대부분 오르가즘 지연이나 이상성감증 [9] 여성환자수를 근거로
      ② 범불안장애: 범불안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성기능 이상(비정상적인 사정, 남성의 발기부전, 성욕감퇴),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갈, 식욕감퇴, 변비,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발기부전), 그리고 발한이 있습니다.

표3. 범불안 장애에 대한 단기간의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률[1,2]

신체부위	증상	벤라팍신서방제제(n=1381)	위약(n=555)
전신	무력증	12%	8%
심혈관계	혈관확장[3]	4%	2%
소화기계	구역	35%	12%
	식욕감퇴	8%	2%
	변비	10%	4%
	구토	5%	3%
	구갈	16%	6%
신경계	불면증	17%	9%
	어지러움	11%	10%
	졸음	12%	6%
	신경과민	6%	4%
	성욕감퇴	4%	2%
	떨림	5%	2%
피부	발한	10%	2%
비뇨생식계	비정상적 사정(남)[5,6]	8%	(1%
	발기부전[6]	4%	(1%
	오르가즘장애(여)[7,8]	2%	(1%

[1] 위약 치료환자에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습니다. : 복통, 비정상적 시야, 뜻밖의 상해, 불안, 등통증, 설사, 월경통, 소화불량, 감기증후군 소화불량, 감염, 근육통, 통증, 인두염, 발진, 비염, 상기도감염. [2] (1%는 0%보다는 크나, 1%보다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3] 대부분 홍조 [4] 대부분 생생한 꿈, 악몽, 다몽 [5] 대부분 시야 흐림 [6] 남성환자수를 근거로 [7] 여성환자수를 근거로 [8] 여성환자수를 근거로 한 %(벤라팍신서방제제=365, 위약=338)
      ③ 사회공포증: 사회공포증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위장관계 장애(구갈, 식욕감퇴, 변비), 중추신경계 장애(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발기부전, 성욕감퇴),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토), 그리고 발한이 있습니다.

표4. 사회공포증에 대한 단기간의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률[1,2]

신체부위	증상	벤라팍신서방제제(n=819)	위약(n=695)
전신	두통	38%	34%
	무력증	19%	9%
	우발성 외상	4%	3%
심혈관계	복통	6%	4%
	고혈압	5%	3%
	혈관확장[3]	3%	2%
	심계항진	3%	1%
소화기계	구역	31%	9%
	식욕감퇴[4]	17%	2%
	변비	9%	3%
	설사	8%	6%
	구토	3%	2%
	소화불량	7%	6%
대사 및 영양	체중감소	2%	(1%
신경계	불면증	24%	8%
	구갈	17%	4%
	어지러움	16%	8%
	졸음	20%	8%
	신경과민	10%	5%
	성욕감퇴	8%	2%
	불안	5%	4%
	초조	3%	1%
	진전	5%	2%
	비정상적 꿈[5]	3%	(1%
	단일수축	3%	(1%
호흡기계	하품	5%	(1%
피부	발한	13%	4%
특수감각	비정상적인 시야[6]	4%	2%
비뇨생식계	비정상적 사정[7,8]	19%	(1%
	발기부전[8]	6%	(1%
	오르가즘장애(여)[9,10]	5%	(1%

[1] 위약 치료환자에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습니다. : 관절통, 등통증, 월경통, 감기증후군 소화불량, 감염, 근육통, 통증, 인두염, 발진, 비염, 상기도감염. [2] (1%는 0%보다는 크나, 1%보다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3] 대부분 얼굴홍조 [4] 대부분 식욕감퇴, 식욕상실 [5] 대부분 생생한 꿈, 악몽, 다몽 [6] 대부분 시야 흐림 [7] 사정지연과 이상성감증을 포함합니다.
[8] 남성환자수를 근거로 한 %(벤라팍신서방제제=454, 위약=357) [9] 비정상적 성감증과 이상성감증을 포함합니다.
[10] 여성환자수를 근거로 한 %(벤라팍신서방제제=365, 위약=338)
      ④ 공황장애: 공황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성기능 이상(비정상적인 사정, 남성의 발기부전, 성욕감퇴),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발기부전), 그리고 발한이 있습니다.

표5. 공황 장애에 대한 단기간의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률[1,2]

신체부위	증상	벤라팍신서방제제(n=1,001)	위약(n=662)
전신	무력증	10%	8%
심혈관계	혈관확장[3]	3%	2%
	고혈압	4%	3%
소화기계	구역	21%	14%
	식욕감퇴	8%	3%
	변비	9%	3%
	구갈	12%	6%
신경계	불면증	17%	9%
	어지러움	11%	10%
	졸음	12%	6%
	성욕감퇴	4%	2%
	떨림	5%	2%
피부	발한	10%	2%
비뇨생식계	비정상적 사정(남)[5,6]	8%	(1%
	발기부전[6]	4%	(1%
	오르가즘장애(여)[7,8]	2%	(1%

[1] 위약 치료환자에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습니다. : 복통, 비정상적 시야, 뜻밖의 상해, 불안, 등통증, 설사, 월경통, 소화불량, 감기증후, 두통, 감염, 진정항진, 통증, 감각이상, 인두염, 발진, 부비동염, 구토
[2] (1%는 0%보다는 크나, 1%보다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3] 대부분 얼굴홍조 [4] 대부분 식욕감퇴, 식욕상실 [5] 대부분 사정지연과 이상성감증 [6] 남성환자수를 근거로 (벤라팍신서방제제= 336명, 위약 = 238명)
[7] 대부분 오르가즘 지연이며, 비정상적

(4) 년월일의 백화. 약송운동 아오르 라운 인주리서 사람내 세에서 핀로 불식 불식 30%/년 이상 화재 사람 본도 주거와 개원에 위워 장우 7.4 ㎎/dl 부근 건습이 미래에 확보하고 있다. 부근 주민 사람과 실시 및 그 수 에서 지표수 취업 주민 1인당 1.5 ㎎/dl 이상 보건소를 방문해 1.2 ㎎/dl 이상 검출된 지역은 전체 조사 지점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지하수 오염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오염원 제거 후에도 수질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멸균 조건

1) 다른 물질을 수반한 용출액 특성

(1) 다른 물질을 수반한 용출액 특성은 용출액 중 주 성분 물질의 용출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특히 고형물 함량이 높은 시료에서는 주 성분 물질뿐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 물질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내 주요 하천 5개소 중 3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하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 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하류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약 2.3배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B하천은 상류 지점에서만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중·하류 지점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러한 차이는 주변 토지 이용 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하천 주변에는 축산 농가 12개소와 대규모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우기 시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B하천 주변은 대부분 산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오염원 노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별 맞춤형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4) 오염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처리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수처리업 등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폐수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시설 운영을 담당할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 시설의 설계 및 변경 시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 처리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두 법령 간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6) 폐수처리업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은 폐수처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을 포함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등록 기준 중 시설 기준은 폐수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탁처리업의 경우 일일 처리 용량 100 ㎥ 이상의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유기성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에는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재이용업의 경우 일일 처리 용량 50 ㎥ 이상 100 ㎥ 미만의 시설을 갖추면 되며, 처리된 폐수를 재이용하는 공정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폐수 발생 규모와 처리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8) 기술인력 기준 역시 업종별로 상이하다. 위탁처리업의 경우 폐수처리기술사 또는 환경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이용업의 경우 폐수처리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처리 용량 10 ㎥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기술인력 1명을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폐수처리 관련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9) 보증금 예치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위탁처리업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재이용업의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폐수처리업 등록 후 14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보증금 예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 폐수처리업 등록 절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는 현장 실사 단계로,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현장 실사 자체는 평균 7일 내외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11)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무등록 폐수처리 적발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처리기준 초과 배출 87건, 폐수 위탁 기준 위반 41건 순이었다. 무등록 적발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처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정지 처분은 평균 45일, 최장 180일이 부과되었으며, 등록 취소 처분은 총 37건이 이루어졌다. 등록 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폐업 신고 후 무단 재개업으로 확인된 경우로 12건이었다. 또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등록 취소가 9건, 보증금 예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등록 취소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폐수처리업 등록 기준이 단순히 시설 요건뿐 아니라 사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3) 처분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처분 중 30일 이상 90일 이하 처분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처분의 약 36%를 차지하였다.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영업정지 처분은 41건으로 전체의 13%에 해당하였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총 5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2,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 처분 사유별 재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37개 업체 중 재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14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실제로 재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9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는 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처분이 사실상 영구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처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업체는 명의를 변경하여 재등록을 시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명의 변경 시 실질적 소유 관계 확인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5) 처분 이력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환경부 폐수처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처분 이력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 등록 및 무등록 영업 적발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무등록 업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관리 체계 강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간 불일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병행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청문 실시 비율은 전체 처분 건수의 약 18%에 해당하였으며, 청문 실시 사유는 대부분 영업정지 90일 이상 처분이었다. 청문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 중 일부는 시설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일률적인 등록 취소보다는 조건부 영업정지 후 개선 이행 확인을 통한 재등록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17)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부과 금액의 100%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부과된 과징금 58건 중 최대 부과 금액이 적용된 사례는 4건이었으며, 이 중 3건은 폐수 무단 방류 및 처리기준 초과 배출이 동시에 적발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과징금 제도가 실제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18) 행정처분 이력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환경부 폐수처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처분 이력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 등록 및 무등록 영업 적발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무등록 업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관리 체계 강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간 불일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병행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행정처분 이력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환경부 폐수처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처분 이력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 등록 및 무등록 영업 적발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무등록 업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관리 체계 강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간 불일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병행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 행정처분 이력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환경부 폐수처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처분 이력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 등록 및 무등록 영업 적발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무등록 업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관리 체계 강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간 불일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병행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행정처분 이력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환경부 폐수처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처분 이력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 등록 및 무등록 영업 적발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무등록 업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관리 체계 강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 간 불일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병행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보관법

1) 보관에 적합한 용기 재질

(1) 보관에 적합한 용기 재질은 보관하려는 액체 또는 고체 성분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용기 자체에서 불순물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리,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등이 널리 사용되며, 각 재질은 보관 대상 물질의 pH, 휘발성, 광민감성 등 특성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2) 유리 재질 용기는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대부분의 산, 염기, 유기용매 보관에 적합하다. 다만 불산(HF)이나 강알칼리성 용액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유리 표면이 부식되어 내부 용액의 농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폴리머 재질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리는 충격에 약하므로 운반 및 취급 시 파손 방지 조치가 필수적이다.

(3) 폴리에틸렌(PE) 재질은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대부분의 수용액 및 묽은 산·염기 보관에 널리 사용된다. 특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에 비해 투과성이 낮아 휘발성 유기물 보관에 더 적합하다. 다만 PE 재질은 강한 산화제나 일부 유기용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팽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4)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은 PE보다 내열성이 우수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 처리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산·염기 용액에 대해 안정적인 보관 성능을 나타낸다. 다만 PP 재질 역시 강한 산화제 및 일부 염소계 용매에 대해서는 내성이 제한적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PP 재질 용기는 투명도가 PE보다 높아 내부 용액의 육안 관찰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재질은 거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우수한 내성을 나타내며, 고온 멸균 처리(최대 250℃ 이상)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PTFE 재질 용기는 가격이 고가이며, 가공 및 성형이 까다로워 대량 보관 용도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극미량 분석 시료 보관 등 특수한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보관 용기의 뚜껑 및 마개 재질 역시 본체 재질과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을 갖추어야 하며, 실리콘 고무 재질 마개는 휘발성 유기물 보관 시 흡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사형 뚜껑의 경우 나사산 부위에 시료가 잔류하기 쉬우므로 세척 시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용기 재질 선정 시에는 보관 기간, 보관 온도, 빛 노출 여부, 멸균 조건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로부터 재질별 화학적 적합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일 시험 내에서 재질이 다른 용기를 혼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2) 보관 온도

(1) 보관 온도는 시료의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리 인자 중 하나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시료 내 성분의 분해, 휘발, 중합 등 변질 현상이 촉진되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감소하여 변질 현상이 억제된다. 따라서 보관 온도는 분석 대상 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2) 보관 온도 조건은 크게 상온(15~25℃), 냉장(2~8℃), 냉동(-20℃ 이하), 초저온(-70℃ 이하)으로 구분된다. 상온 보관은 비교적 안정한 무기 성분 시료나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냉장 보관은 대부분의 유기 성분 시료에 권장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냉동 보관은 장기 보관이 필요한 시료나 효소 활성 유지가 필요한 시료에 적용하며, 초저온 보관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 보관 온도 설정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장 보관 시 결빙에 의한 시료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냉동 보관 시 반복적인 동결-해동 과정은 시료 성분의 변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1회 사용량 단위로 분주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관 온도 변경 시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용기 파손 및 시료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4) 온도 외에 습도 및 빛 노출 여부 또한 보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흡습성 시료의 변질이 촉진될 수 있으며, 빛에 민감한 성분은 갈색 용기 또는 차광 처리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부 조건은 개별 시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료별 보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보관 온도 변동 범위 또한 중요한 관리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보관 온도의 허용 변동 범위는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온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료의 품질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분석 또는 재채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온도 변동 이력은 보관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관 온도 설정 및 관리 책임은 시료 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있으며, 보관 온도 이탈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적절히 운영될 때 비로소 시료의 대표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3) 보관 기간

(1) 보관 기간은 시료 채취 후 분석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료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한다. 보관 기간은 분석 항목의 종류, 시료의 안정성,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 시료의 경우 7일에서 30일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나 미생물 분석 시료와 같이 보관 기간이 매우 짧게 요구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보관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분석 항목별로 권장되는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그 중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총대장균군 분석 항목의 권장 보관 기간이 24시간이고 질산성 질소 분석 항목의 권장 보관 기간이 7일인 경우, 해당 시료의 보관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3) 보관 기간 내에 분석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 기간 연장은 시료의 품질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기간 연장 시에는 보관 조건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 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보관 기간 관리 책임은 시료 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있으며, 보관 기간 초과로 인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재채취 및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1장 총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5) 보관 기간 준수 여부는 정기적인 내부 점검 항목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관 기간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관 용기 용량 조정, 분석 우선순위 재설정, 외부 위탁 분석 활용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4) 보관 조건

(1) 보관 조건은 시료의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리 인자 중 하나이다. 온도, 빛, 습도, 공기 노출 여부 등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료 성분의 분해, 휘발, 산화 등 변질 현상이 촉진되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시료별 보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온도 조건은 보관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시료 성분의 변질이 촉진되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감소하여 변질 현상이 억제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보관 온도는 분석 대상 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보관 온도는 크게 상온(15~25℃), 냉장(2~8℃), 냉동(-20℃ 이하), 초저온(-70℃ 이하)으로 구분된다. 상온 보관은 비교적 안정한 무기 성분 시료나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냉장 보관은 대부분의 유기 성분 시료에 권장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냉동 보관은 장기 보관이 필요한 시료나 효소 활성 유지가 필요한 시료에 적용하며, 초저온 보관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4) 온도 외에 습도 및 빛 노출 여부 또한 보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흡습성 시료의 변질이 촉진될 수 있으며, 빛에 민감한 성분은 갈색 용기 또는 차광 처리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부 조건은 개별 시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료별 보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보관 온도 변동 범위 또한 중요한 관리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보관 온도의 허용 변동 범위는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온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료의 품질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분석 또는 재채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온도 변동 이력은 보관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관 온도 설정 및 관리 책임은 시료 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있으며, 보관 온도 이탈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적절히 운영될 때 비로소 시료의 대표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제조의뢰 및 판매원 :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공 장 : 경기도 화성시 우리로 66
제조원 : 남천당제약주식회사
공 장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제약공단 22길 71

[포장안내] 지사제 1정 함유 성분 : 로페라미드염산염 2.0 mg
[저장방법] 기밀용기, 25 ℃ 이하 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 식약 고시 제2017-71호 의약외품 허가 사항입니다.
※ 약국 구입 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나, 복용 전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하십시오.
※ 본 제품은 공정 거래법 제29조에 따라 2012년 9월 18일 이후 판매된 제품에 한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 첨부문서는 2015년 9월 18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80-990-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제정 및 개정 : 2012년 9월 18일
홈페이지 : 「www.yungil.co.kr」

1) 개요

(1) 이 약품은 성분명 Loperamide hydrochloride 2.0 mg을 함유한 지사제로, 급성 및 만성 설사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장관 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장관 운동을 억제하고 수분 흡수를 촉진함으로써 설사 증상을 개선한다.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1호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전문의약품과 달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2) 제조원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제약공단 22길 71에 소재한 남천당제약주식회사이며, 품목허가 번호는 제2012-0458호이다.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는 각 포장 하단에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다. 개봉 후 재사용은 금지되며, 남은 약은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이 약품은 장관 내 수용성 염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설사에 적응증을 가진다. 세균성 이질이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설사, 항생제 복용 중 발생한 설사 등 원인 균이 명확한 경우에는 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성분명 로페라미드염산염은 장관 평활근의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장관 내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고,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이 작용은 복용 후 약 1~2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4~6시간 이내에 증상의 현저한 호전을 경험하게 된다. 다만 개인에 따라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이 약품은 혈액-뇌 장벽을 거의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추신경계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고용량 복용 시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성분 및 함량

(1) 이 약품 1정(2.0 mg) 중에 함유된 성분 및 함량은 다음과 같다.

성분명	함량	역할
Loperamide hydrochloride	2.0 mg	주성분
옥수수전분	48.0 mg	부형제
젖당수화물	35.0 mg	부형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0 mg	활택제
합계	86.0 mg	

(2) 부형제로 사용된 옥수수전분과 젖당수화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원료성분 및 분량」에 따라 사용량이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밀가루 및 대두 유래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약품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선천성 갈락토스 불내증, 루포 분해 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스 흡수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유당 함량은 1정당 약 35 mg으로 일반 식품 수준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환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당 불내증 환자는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4) 색소 및 향료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색 무취의 백색 정제로 제조되었다. 보관 중 변색이 관찰되는 경우 복용하지 말고 약국에 문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3) 효능·효과

(1) 이 약품은 다음 증상의 완화를 효능·효과로 한다.

① 급성 및 만성 설사 증상의 완화

② 여행자 설사(traveler's diarrhea)의 증상 완화

③ 회장루 또는 결장루 보유자에서 과도한 배출량 감소

(2) 설사 증상은 감염성 원인과 비감염성 원인으로 구분되며, 감염성 설사의 경우 원인 균에 대한 적절한 항균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제품은 설사 증상 자체를 완화하는 대증요법제로서, 원인 균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항생제 또는 항균제와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① 이 약 또는 첨가제에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

② 세균성 이질 환자 또는 세균성 이질이 의심되는 환자

③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④ 장관 폐색, 마비성 장폐색 또는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

⑤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

⑥ 간경변증 환자 중 혼수 전구 증상이 있는 환자

⑦ 임부 및 수유부 (임부에 대한 안전성 자료 부족)

⑧ 12세 미만 소아 (별도 제형 사용)

4) 용법·용량

(1)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표준 용법·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용량	투여 횟수
초회 투여	2정 (4.0 mg)	1회
이후 설사 발생 시마다	1정 (2.0 mg)	1회
1일 최대 투여량	8정 (16.0 mg)	1일

(2) 초회 투여 후 묽은 변이 계속되는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복통, 발열, 혈변 등 동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회장루 또는 결장루 보유자에서 과도한 배출량을 감소시킬 때에는 1일 최대 12정(24.0 mg)까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 하에 투여하여야 한다.

(4)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1일 최대 투여량을 4정(8.0 mg)으로 제한하며, 투여 간격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신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 신부전(혈청 크레아티닌 3.0 mg/dl 이상) 환자에서는 사용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주의하여 투여한다.

(6) 고령자(65세 이상)에서는 변비 및 복부 팽만감 등 부작용 발현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 유효 용량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① 2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감독 하에 1회 0.5 mg(0.25 mg/kg) 이하로 투여하여야 하며, 1일 최대 2.5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6세 이상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1회 1 mg(0.5 mg/kg), 1일 최대 5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투여 간격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독소 배출이 억제되어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졸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기계 조작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⑥ 장기간(4주 이상) 복용하는 경우 간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약물과 병용 투여 시 상호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병용 약물	상호작용	조치
퀴니딘	로페라미드 혈중 농도 증가	병용 금기
리토나비르	로페라미드 혈중 농도 증가	병용 금기
시메티딘	로페라미드 혈중 농도 증가	용량 조절
활성탄	로페라미드 흡수 감소	2시간 이상 간격
항콜린제	장관 운동 억제 작용 상가	병용 주의

6) 부작용

(1) 이 약품의 부작용 발현율은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매우 흔한 부작용 (10% 이상): 변비, 복부 팽만감, 구역, 어지러움

② 흔한 부작용 (1~10% 미만): 복통, 소화불량, 구갈, 피로감, 졸음

③ 드문 부작용 (0.1~1% 미만): 발진, 가려움, 두통, 현기증

④ 매우 드문 부작용 (0.1% 미만): 장폐색, 중독성 거대결장, 과민반응(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2) 변비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특히 고령 환자에서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변비 증상이 심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폐색 및 중독성 거대결장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나, 복통, 구토, 복부 팽만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한다.

(3) 과민반응(발진, 가려움,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4) 부작용 보고 : 이 약품 복용 후 발생한 이상반응은 아래 연락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당제약주식회사 의약품안전관리팀 : 031-8247-5510

7) 상호작용

(1) 다음 약물과 병용 투여 시 상호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퀴니딘 : 로페라미드 혈중 농도 증가 → 병용 금기

② 리토나비르 : 로페라미드 혈중 농도 증가 → 병용 금기

③ 시메티딘 : 로페라미드 혈중 농도 증가 → 용량 조절

④ 활성탄 : 로페라미드 흡수 감소 → 2시간 이상 간격

⑤ 항콜린제 : 장관 운동 억제 작용 상가 → 병용 주의

(2) 퀴니딘 및 리토나비르는 CYP3A4 및 P-당단백질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로페라미드의 혈중 농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이 경우 심전도 QT 간격 연장 및 중증 심실부정맥 발생 위험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병용 투여를 금기로 한다.

(3) 시메티딘은 CYP3A4 억제를 통하여 로페라미드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임상적 중요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 병용 시에는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4) 활성탄은 로페라미드의 흡수를 물리적으로 감소시키므로,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 항콜린제(아트로핀, 프로판텔린 등)는 장관 운동 억제 작용을 상가시켜 중증 장폐색 및 중독성 거대결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병용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6) 알코올 :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상가시킬 수 있으므로 음주 중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과량투여 시 처치

(1) 과량투여 시 증상 : 로페라미드 과량투여 시 중추신경